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6. 11.(목) 09: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6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26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건 (2015-27-14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역방송의 열악한 경영여건 관련입니다.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지역방송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난 5년간 지상파 전체의 광고수익은 연평균 1.89% 성장하였으나 지역방송은 1.36%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방송의 자체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방송 전문인력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방송의 필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부족으로 지역방송 제작 및 운영 역량이 제한되었습니다. 지상파 전체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44% 증가한 반면, 지역방송사는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사의 자체편성 비율은 지역MBC가 16% 가량, 지역민방은 29%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프로그램 유통 부족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있어도 판매·유통채널 부족으로 지역 교차방송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13년 기준 지역방송의 방송프로그램 판매 수

익은 140억원이며, 지난 5년간 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지상파 전체가 연평균 18.3% 증가한 반면 지역방송은 5.7%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 추구권 실현입니다. 목표로는 지역방송의 제작·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기반 구축, 공유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입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별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입니다. 구체적인 방안 작은 첫 번째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정체성 유지 및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성이 강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사의 지역문화 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역방송사의 새로운 수익구조 발굴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포맷 개발 지원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역사회 공유자원의 활용 확대입니다.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지자체, 각계 전문가 등 지역사회 공유자원으로 구성된 '지역방송 상생 협의체'를 발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지역프로그램 제작 기반 강화입니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전략 두 번째로 지역프로그램 유통 촉진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합리화입니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및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자체편성비율 규제 방식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유통확대를 위해 지역방송사가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 과제는 기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역방송 유통 인프라 조성입니다. 우수한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해외한국어 방송사에 방영되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재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지원하는 디지털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지역방송의 시청 확대 및 홍보·유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전략 세 번째로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지역방송의 지역성 평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에 공표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에 따라 2016년도부터 지역성 지수 평가결과를 기금지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역방송사 인적 자원의 고도화 및 전문화 관련하여 방송기술 변화에 따라 방송제작 및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방송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방송고도화 대응 역량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방송 종사자들에게 해외 중장기 방송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하여 선진 방송역량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략 네 번째입니다. 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협찬규제 개선입니다.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 재조정 등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현행 전파료 요금은 초당 정액요금제로서 지역별 시장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방송의 요구가 있어서 네트워크방송사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방통위,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또는 논의기구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은 네 번째 결합판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결합판매 고시에서 규정한 공영 미디어랩과 민영미디어랩 간 지원대상 매체의 지정 및 결합판매지원 부담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어 수신료 인상 등 방송광고시장 변동 시점과 연동하여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배제하고 중립적이면서도 지역성·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아시다시피 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고삼석 위원이 간사를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고삼석 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반을 가동하고 그 연구반에서 성안된 안을 가지고 지발위에서 수차례 논의하고, 그 법 정신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 최종 성안이 됐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과정에서 들은 바대로 크게 지역방송의 지역 여론의 수렴, 그리고 지역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 유통 지원,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 광고와 협찬, 편성에 대한 제도개선 등 포괄적으로 의견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된지 6개월 만에 안이 탄생하게 된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늘의 계획을 만들기까지 수고해 주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부위원장님, 또 간사 및 연구반을 총 지휘하셨던 고삼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무래도 지원계획안이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안이 보고됐는지를 간단히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총괄을 맡아서 금년 3월까지 이 연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지역방송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아니면 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부터 긴밀히 소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선택은 후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MBC, 그리고 지역민방이 추천한 현업인들과 지금까지 지역방송을 주로 연구해 온 지역의 언론학자들이 연구반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지역방송들의 의견, 그리고 지역방송과 관계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경과에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전에 연구반의 운영계획을 보고했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정식 보고 안건으로 채택하기 전에 또 한 차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합 4차례 정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왔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역시나 저희들이 현재의 제도와 한정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하고자 하는 일들 간의 간극이 상당히 컸다, 즉 현실과 기대 간에 간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1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을 구현하고,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안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5조에 있는 지역방송의 책무를 보면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의결되어서 이러한 지역방송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지역방송의 책무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특히 지역방송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몇 가지 질문 내지 의견을 드렸으면 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지자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맨 앞 추진경과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지자체의 책무도 있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지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추진경과에 적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있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지자체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반영을 못 했고, 기재부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재부는 됐습니다. 저는 지자체가 지역방송발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냐를 물어보기 위해 질문한 것입니다. 고 위원님, 연구반을 운영할 때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지자체 관련 단체, 연구기관에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혹시 지자체에서 참여는 했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참여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계획을 마련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시·도의 관계자 분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특별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계획을 수립할 때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규정이긴 하지만, 특히 지역방송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관심, 참여, 여러 가지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고삼석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시지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 위원님께서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은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 수립이 목표가 아니고, 법에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 수립된 계획이 의미를 가지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얼마만큼 그것이 실천 가능한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것과 제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3개년 계획이니까 연도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지날 때마다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한 번 평가해서 어떤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잘 분석해서 그다음 해에는 좀 더 다른 노력을 함으로써..., 저는 어쨌든 이번에 여러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마련한 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지역방송발전에 대해 방통위를 포함한 중앙정부 내지 지자체의 지원이 좀 더 잘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계획 수립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두 번째 계획할 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

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방송정책국에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3년 계획이기 때문에 3년 있다가 다시 평가하는 것은 나중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1년 단위로 보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진 경과와 관련해서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발위 안건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관련해서 4번의 회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2015년 3월 12일과 3월 26일에 있었고, 2015년 4월과 5월에도 있어서 총 4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드립니다. 그리고 4월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고, 그때 의견수렴 했을 때, 지역에서 일부 의견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광역시에서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때 난시청 민원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방송사의 자체 해결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계획의 성격과는 상이해서 포함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법상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방송사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의결안건> 4페이지에 보면 지역방송들의 자체편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MBC 18개사의 평균 자체편성비율이 약 16%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방 10개사의 자체편성 비율은 약 35%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마 지역방송들의 자체편성·자체제작은 지역성과 그 권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것일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MBC는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독립된 지역MBC들이고 또 지역민방이 있습니다.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자체편성 비율이 높아야 지역방송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나 지역방송들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퍼센트 이상 하라든가, 권장하는 규제 선이 있습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놓아두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前 지역방송팀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前 지역방송팀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방송의 자체편성과 관련된 규제는 민방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각 지역민방들의 불만소리도 들었습니다. 지방 출장 다닐 때 만나보면 “이것은 너무 차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MBC도 독립법인이라면 당연히 자체편성 비율, 자체제작 비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민방만 따로 규제하는 이유는….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前 지역방송팀장)

- '95년 지역민방이 처음 도입되면서 수중계 비율을 제한한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이 법입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前 지역방송팀장)

- 방송법에 다른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중계할 수 있는 비율을 1차, 2차, 3차 민방으로 구분하여….

○ 김재홍 상임위원

- 민방에 대해서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前 지역방송팀장)

- 민방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체편성 규제를 자체제작 비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지원 계획의 목표이고, 그렇게 되면 자체편성,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지역MBC 등에 대해서도 비율 규제나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역MBC에 대해 말씀 드린 것인데 자체제작·자체편성 비율을 높이라고 권유하거나 그에 대한 규제를 만들려면 우선 재정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MBC 본사와 지역MBC 간 전파료 배분이나 광고료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립법인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자체제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기 때문에 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연구반 또는 논의기구를 통해 검토하려고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이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사들의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금년에 방통위가 시행하는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봤는데, 아시다시피 KBS전주방송총국이 전라북도 지방의 '소리'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대상을 받았는데, 지역방송에서 방송대상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지원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밑에 보니까 OBS경인TV를 제외한 수치를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OBS는 자체편성 비율이 100%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방송을 추월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OBS가 재정상태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제작 비율을 근거로 평가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방송 모두에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 지역 문화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제작·자체편성 비율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겠지만 선을 정해서 올리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방송들이 자체제작 비율이 이렇게 낮는데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재판매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해외 한국어방송들이 미국과 중국에 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방송의 시청자들은 모국에 자신들의 고향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이 높은 지역적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그런 한국어방송들에 각 지역방송들이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서비스하는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콘텐츠 수출은 아니겠지만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전파료 배분 체계 개선과 결합판매 제도 개선인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연구단계에 와 있고, 또 제일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아직까지는 연구반 또는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방향이 잡혀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사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두 개의 어려운 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금 할애해 달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획기적인 조치,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내걸고 전체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한두 개 지역방송사들이 퇴출되거나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함께 힘을 합해 살리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것에 대해서는...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발위에서 지금까지 많이 논의해 왔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발위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처에서 지혜로운 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방송사들을 위해, 정치인들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는데 그분들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파료 배분과 결합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방송사들이 다 만장일치로는 안 되겠지만 다수가 동의해 주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OBS 문제 또한 지역방송 정책과 오늘 보고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사실상 전체적인 총론을 가지고 보고하고 의결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역민방들은 SBS의 네트워크사로서의 관계가 있지만 OBS는 편성비율에서 보듯이 독립된 지역민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BS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또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발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매우 의미 있는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반을 구성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부응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지역 방송사들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에서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역방송을 위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힘껏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지역방송의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들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민을 위해 기여해야겠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종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역방송팀이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방송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27-14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작년 5월에 참여연대에서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SK텔링크 및 SK텔링크의 대리점·TM(telemarketing)업체 등 유통점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신고 이후 주요경과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SK텔링크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SK텔링크와 유통점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SK텔링크가 유통점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인 SKT로 오인케 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명(SK텔링크)을 밝히지 않은 총 1,244건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후, 이용자에게 사후적으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총 2,186건

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제4호 위반에 해당되며, 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SK텔링크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제재방안은 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유통점이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 3,430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제3호 위반에 해당되며, 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SK텔링크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SK텔링크에 대해 위법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징금 부과입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 과징금으로 하되, 과징금 상한액은 8억원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반행위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에 10~30%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가중하고, 그다음에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조사협조 또는 과실여부 등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반의 내용, 정도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2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SK텔링크의 위반행위 기간이 10개월이므로 기준금액에 20%를 필수적으로 가중하고, SK텔링크가 TM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20%를 추가적으로 가중해서 최종적으로는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의 결해 주시면 이달 중으로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을 때 확인했던 내용입니다만 허위 고지, 그다음에 단말기 가격, 원래는 공짜로 안내했다가 단말기 가격을 청구한 건이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붙임 3> 5쪽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50대에서 26% 정도, 60대 이상이 약 60%로 합치면 피해자의 약 86% 정도가 5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실제로 안전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쉽게 말하면 위반행위의 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봅니다.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또 공짜라고 안내하고 나서는 사후에 단말기가격을 청구하는 행위들은 시장 1위 사업자, 물론 자회사이지만 시장 1위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규모와 달리 저는 이 사안 자체를, 보고받았을 때부터 대단히 중요한 위반사항으로 생각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제재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안 자체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지만 만약에 제재를 좀 더 높게, 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 3페이지 <가> 첫 번째 동그라미 밑에 막대기에 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할인요금’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후, 이용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이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설명해서..., 일정한 기간 즉 2년이면 2년의 가입 기간 동안 약정에 따라 요금 할인된 총액이 단말기 대금과 같아집니까, 아니면 단말기 대금이 그것보다도 더 초과하는데 단말기 대금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를 들어 이것은 대부분 피쳐폰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출고가격이 통상 50만원대 정도 되는데, 2년간 약정할인을 하면 50만원대 출고가인 경우에 통상 8,000원 정도의 약정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말기 할부대금은 36개월로 할부를 청구하게 되는데 월 1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정할인 액수와 단말기 할부금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이 한 달에 8,000원이면, 예를 들어 2년 약정을 했다면, 24개월이면 19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말기 가격이 19만 2,000원 정도입

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단말기 가격은, 예를 들어 53만원짜리 단말기일 경우에 지원금을 12만 8,000원을 받는다면 할부원금은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40만원을 36개월로 할부청구했을 경우에 11,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으로 메워지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근거 없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정할인금액을 단말기 금액으로 대체한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대체해서 단말기 금액과 같은 금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실은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이지만 마치 단말기 대금할인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서로 대체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용자 부담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허위로 해서 유도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어 단말기 대금이 지원금을 받아도 40만원 정도인데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20만원이 채 안 되고, 그러면 실제로 단말기 대금을 그렇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인 것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만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전화상으로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여기에 들어간 돈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도록 한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명백하게 일정한 금액, 더구나 20만원 정도의 부담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서 가입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지할 수 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3,430건의 민원건수 중 확인해 보니까 26% 정도가 가입을 철회하거나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설명을 통해 수긍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가입 철회와 해지는 26% 정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6%는 소비자들이 저희 조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SK텔링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지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아서 가입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리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줄 필요는 없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SK텔링크와 업무절차 개선 명령에 관해 협의를 할 때 협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위반건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SK텔링크가 앞으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직접 이용자들에게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SK텔링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심의·의결서를 보내고,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확인할 때 한 번 협의를 통해 준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가 희망하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SK텔링크가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하면 못 하는 것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이행계획서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했으면 그동안 받았던 할부금은 돌려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대금으로 바꾼 부분은 어차피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차이나는 20만원 정도에 대해 원래 TM영업한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한 것 아닙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할부금이 청구가 됐다면 SK텔레콤이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마케팅 할 때 전화로 했다면 분명히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2,186건에 대해 녹취록을 확인하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과장께서 자꾸 SK텔레콤과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릴 때는 의견수렴 차원에서 협의하지만, 방통위가 이것은 이렇게 시정을 명확하게 해야겠다고 하면 그렇게 시정명령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실행이 가능할까를 가늠하기 위해 의견을 듣는 것이지, 피심인이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선에서만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녹취록을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해보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녹취록을 100% 확보하고 있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만 녹취 관련해서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TM이라는 것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입자를 모집할 때 처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하는 기회가 있는데 가입하겠느냐?” 의사를 물어보고 이름과 주소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TM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든지, 신용조회를 하고 나서 단말기를 배송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TM 부분 녹취록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TM업체를 조사할 때 그러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녹취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지만, 어쨌든 증빙자료는 없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실제로 녹취를 하지 않았거나 녹취를 했는데 기록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시정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위의 소비자보호법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법에 따라 이런 마케팅, TM을 통해 할 때는 녹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확인이 안 되게 그것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실정법도 한 번 살펴봐야 하고..., 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체에 이용자보호 차원에서 그런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붙임 3> 7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녹취록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일단 단말기를 배송한 뒤에는 가입자에게 세 번째 전화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가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설명할 때는 사실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 중에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가입을 유도한 증거자료는 무엇입니까? 2,186건 중에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가입을 유도했다는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첫 번째 TM 할 때 단말기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고 가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처음 TM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여부를 SK텔링크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점...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아니고..., 2,186명이 전부 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2,186건은 모두 문제를 제기한 건수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186건이 참여연대에 전부….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구체적인 내용을 참여연대가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2,186건은 SK텔링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이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녹취파일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녹취한 것….

○ 최성준 위원장

- 2,186명이 전부 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기가 TM으로 설명들을 때에는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혹시 TM를 하려면 스크립트를 다 배부하지요? 그 스크립트는 확보가 됐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스크립트는 확보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스크립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붙임 3> 7쪽과 8쪽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2,186건의 민원사례가 제시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 <TM영업 녹취록> 중에 빨간색 밑줄이 있는 ‘기기값은 없이 무료로 지원되고’라는 녹취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입수한 스크립트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뚜껑 닫았다 열었다 하는 일반폰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스크립트는 누가 작성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TM업체가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TM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TM업체는 가격을 결정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스크립트는 SK텔링크가 보내준 것 아닙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SK텔링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작성 주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SK텔링크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TM업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TM업체가 자기네들 임의로 이런 계약조건을 설명하면서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SK텔링크도 TM업체와 서로 연락하면서 이런 스크립트를 설명하는 것을 용인한 것인지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SK텔링크의 책임여부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SK텔링크가 TM 영업과 무관하다 주장하여 추가적 가중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지금 나타난 자료로서는 SK텔링크가 TM업체에게 이용자 기망행위를 지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TM 영업부서가 SK텔링크와 어떤 관계입니까? 외주로 해서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SK텔링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TM이나 콜센터에는 회사 관계자가 거의 상주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이 TM업체는 SK텔링크 본사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 SK텔링크의 대리점과 계약한 업체들입니다. 다만 SK텔링크의 일부 대리점에서는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인 TM을 한 대리점도 소수 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대리점이면서 TM영업을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완전히 TM 전문업체로서 TM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하나의 대리점이 여러 TM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일부라도 SK텔링크의 책임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렇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보기에는 SK텔링크가 스크립트 작성의 주체라기보다 기본적인 이 영업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단말기가 됐든, 가입자 계약이 됐든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그리고 저희가 SK텔링크 본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SK텔링크 본사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의 내용을 SK텔링크 본사가 파악하고서 참여연대가 작년엔 신고한 5월 이후, 7월부터는 페널티 부과정책을 만들어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8개 대리점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이런 조치를 일부 취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8개 대리점에 이러한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행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페널티 부과만 할뿐 다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SK텔링크 의견서에 '단말기 구매금액에 부담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무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것은 무슨 취지입니까? 구매대금에 부담이 없다는 것과 무료라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SK텔링크 주장은 TM업체가 TM을 할 때 단말기 구매대금에 부담이 없다고 TM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용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 내용을 모두 들어보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나오고 스크립트상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스크립트상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SK텔링크가 전혀 TM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사태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할 때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둘 중의 하나 이지 않습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제가 원래 보고받을 때는 약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 할인금액으로 바꿔 설명한 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단말기 대금에 대해 엄연히 그렇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한 2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무료라고 TM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물건을 판매하면서 가격의 20만원 상당을 허위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50대, 60대를 상대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가 된다면 중대성이 중대한 위반행위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판매금액을 20만원씩이나 속이고 판매하는 것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른 위반행위가 나왔을 때 과연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인데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 중에 가격을 허위로 고지한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을지...,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됐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SK텔레콤이 직접 지시를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쪽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최소한 스크립트에 의해 TM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 아닙니까? 지금 판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실무자 입장에서는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쉽게 이야기하면 20만원짜리를 무료라고 이야기한 셈 아닙니까?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가입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20만원을 할부로 청구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 주시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으로 되어 있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중대성이 약한 경우?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SK텔링크에 이야기해서 여기에 있는 2,186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회복을 하도록 조치하고 다 시행하고 나면 그때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적절한 과징금 처분을 한다든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피해회복이 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지만 지금 피해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정을 보류하고 그다음에 SK텔링크가 스스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 연락해서 피해회복을 다 시켜 주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그때 저희가 피해회복을 이유로 해서 지금 판단한 것처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SKT와 SK텔링크의 경우 동일한 법으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동일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지요?

○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판단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이번 사안을 넣은 것은 알뜰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으니까, 기존 이통사와는 조금의 차별을 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행위 자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의 규모를 가지

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으면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또 중대한 위반행위라도 과징금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에서 6억원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규모를, 이통사와는 똑같은 어떤 행위를 범했다라도 부과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조금 경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행위를 우리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맞추기 위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도 규제기관으로서 모양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하더라도 3억원에서 6억원, 지금 2억 5,000만원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기준금액이 그렇고, 결국 최종 금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기준 금액 자체는 2억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니까 그것을 조금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제재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대놓고 금액을 허위로 이야기한 사례를 처리한 적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의 제재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둘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고 저희는 그 수준에 맞는 강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지금 상태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제재하고, 시정명령으로 이용자들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논의하셨는데 의결을 보류해서 사무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하여 논의한 다음에 하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방법이 한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논의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앞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서 제재안에 대해 불만은 있으나 동의한다는 입장을 드렸

습니다. 사전에 논의할 때에는 제가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자제를 시켜 이 정도로 해서 제재안이 올라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 드리면서, '불가피하지만 현재 올라와 있는 제재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제 입장은 유보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말씀 중에 사전에 논의할 때 다른 분들이 자제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여기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3가지 방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김재영 방송기반국장께서 운영 기본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석우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법(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 미디어 교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확대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기본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에 방송법이 개정되어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작년 6월 법인설립지원팀을 구성하고, 7월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총 9회의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정관, 이사회 운영, 직제, 인사, 회계, 보수 등 주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15일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고 종전에 KCA로부터 시청자 권익증진 관련 사업, 인력, 예산,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제1차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재단 운영기본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개요 설명 및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시청자진흥본부장이 상세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 여러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제 막 출범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재단의 직원들은 지난 10여년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방송과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참여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크나큰 역할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 재단의 출범으로 중요한 결실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실이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시대적인 소명은 국민 누구나 방송 미디어의 이용과 활동에 손쉽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소통과 화합, 나아가서 국민 행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미디어 인재 양성과 국가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 미디어의 허브로서 새로이 도약하고 변화를 이루는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장의 선도자로서 제가 가진 역량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방송과 미디어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함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의 기자 경력 가운데 20년을 방송언론인으로 재직했고, 최근까지 공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성과 균형성·형평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당연한 저의 업무 자세이자 기본적인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저의 기자 경력과 공직 재직 동안에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전문성과 자세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해서 공모에 지원했고, 공모절차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인정되어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사 퇴직 후에 자유언론인 시절에 특수한 방송환경에 맞추어서 잠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우려하는 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늘 유념해서 매사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재단이 국민의 미디어 복지와 진흥을 견인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해서 세계적인 선도적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는데 큰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기본계획안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재단의 시청자진흥본부장인 박태옥 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박태옥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미리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 이전의 문제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업무계획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양해해 주시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사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김재홍 위원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기존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사장이 추천·임명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사의 적절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재단 이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 이사장님에 대해 직함은 이사장님으로 부르지만 아직은 제가 이사장 인사에 대해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

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사장님이 추천 임명되는 과정들에 대해, 그리고 그 인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그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에 대한 문제와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언론인으로서 수십 년간 재직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그리고 공직과 언론인의 정도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 다만 퇴직 후에 자유언론인으로서 활동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언론인 퇴직 이후 자유언론인 시절에 정도를 벗어난 쪽이 아주 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제가 인사말씀에 함축적으로 다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유언론인은 자유 언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사실을 오도한 측면보다는 자유언론인으로서 또 특수한 방송환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발언하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과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충분히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유념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나 우려를 끼쳐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인사말씀에 드린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짐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그리고 시청자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고자 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첫째, 재단 이사장 공모와 검증절차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마감 직후에 내정설이 흘러 나왔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응모 전에 혹시 청와대나 방통위의 다른 분들과 상의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내정설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상의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으로 사임한 후에 저는 공부를 더하거나 아니면 대학 강단에 서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지인들도 만나보고 알아보던 중에 지인이 “이런 재단이 출범하는데 당신하고 잘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쪽 보니까 제가 하면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원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전혀 없습니다. 내정설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다는 점 때문에 ‘저 정도라면 내정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일체 제가 이상하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이야기가 오간 적도 없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공정하게, 특히 공적인 분야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제가 느꼈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오히려 안 될까 봐 나중에는 조금 노심초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왜 자꾸 검증이 부실하다고 하나면, 이사장님 직위가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인지는 아시지요?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혹시 검증과정에서 어떤 검증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증동의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하셨을 것이고, 그것 외에 다른 과정을 거쳤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제가 국무총리 공보실장으로 들어갈 때 받았던 검증과 똑같은 검증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혹시 청와대 쪽으로부터 다른 의견요청이나 소명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없습니다. 제가 앞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의 보수단체와 같이 활동하셨던 활동내역이나 트위터 상의 활동에 대해 혹시 청와대 쪽으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사장님께 질문하실 것을 한 번 쪽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해 보고자 하나면 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려는 것 중에 이 자리에서 묻거나 확인할 것과 비공개된 자리에서 할 것을 구분해

서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민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들은 그동안 이사장 인선 절차, 그리고 인선된 이후에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에서도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이사장님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회의 진행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청문 대상인 경우와 지금 이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그와 유사하게 질문 내지는 확인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 스스로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처음 있는….

○ **고삼석 상임위원**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 그리고 최종 검증절차에서 저는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인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수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검증이 안 됐다, 그다음에 인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전체회의 안건 자체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앞으로의 운영기본계획에 관해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그 보고를 위해 이사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고 위원님께서 이사장님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위가 자꾸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묻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 질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답변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묻고 답하고 계셔

서,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제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처음에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서 과연 이사장님께서 재단의 이사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과 연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문이 해소되어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업무보고를 안 받을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물으시겠다는 취지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어찌 보면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것 중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공개된 회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재단의 운영 기본방향과 과거의 소신들을 연관해서 여쭙 보려고 합니다. 재단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지 말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 드리면, 재단 운영의 기본 방향 첫 번째, 시청자 권익 실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있습니다. 과연 이사장님께서 시청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재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있으신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식 강화입니다. 과연 공동체의식 강화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거나 활동하신 내역들이 이것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여쭙 보고 싶은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이런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장의 선임과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내용 모든 것 하나하나와 관련해서 적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과 연결시켜서 하나하나 따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마치 이 자리에서 개인 간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보고라는 전체 틀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의사진행성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사항은 아시다시피 법정 심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결사항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결사항이라면 저는 여기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야 하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장께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임위원들은 이사장의 선임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인사비밀처럼 독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오늘 처음 상견례,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공개된 사항입니다만 언론보도에서 또 시청자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난 번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이 재단을 이끌어갈 이사장의 소신과 비전을 먼저 물어보고 선임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 오늘 이 안건에 영 맞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냥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상견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 비전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신과 비전을 여쭙 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시고 여러 가지 지나온 경과 때문에 한 번 확인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양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으시는 범위가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위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물으시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약간 나왔지만, 과거 이사장의 개인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 업무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소신과 비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과거의 발언을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로 보는 적

절치 못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심결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과는 다른,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이것이 아납니까? 조직, 그다음에 사업도 있고 예산까지 다 있는데, 이것이 재단 내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아납니까? 그리고 심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들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범위 내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처음 생겨서 일단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받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것은 심의·의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우선 이사장으로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일단 보고하는 자리이고, 즉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사전에 오늘 보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사장님과 관련된 문제들, 인선절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사의 적정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려야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관련해서 진행상 이러한 방식에 대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계속 진행하시고, 다만 그 내용이 제가 봐서 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그때 비공개로 돌리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묻고 싶은 질문은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많이 제지를 해서 제가 다 못하고, 나중에 궁금증이

해소 안 되면 비공개라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취지, 그다음에 재단의 기본 운영 방향을 봤을 때,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께서 과거에 물론 자유언론인 시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정파적으로 특정 진영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의 자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론의 장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자유언론인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의 입장을 대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지 않지요?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특정 정파나 이념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현실의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향이 맞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 자유언론인으로서 표출한 적이 조금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국민 전체로서 시민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그것이 도움 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자유언론의 영역과 공직에 들어갔을 때 수행해야 할 임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여쭙 보는 것입니다. 과거 언론인으로서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자유언론인 기간 동안에 활동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공직을 맡으신 것, 저는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간에 있어서는 정말 괴리가 큼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과 활동, 그리고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 재단이 구현해야 할 운영방안, 방침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크게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앞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이 다짐이 사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쭙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소신입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제가 살아온 경력 중에 기자로 살아온 경력이 30년입니다. 제가 인사말씀에 드린 대로 30년 동안 한 번도 기자로서의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으로 1년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자유언론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자유언론인으로서 한 발언은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업무와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연 그럴까요? 사실 재단 이사장처럼 중요한 자리는 어찌 보면 평생 살아왔던 이력과 소신들이 응축되어서 마지막으로 봉사해야 하는 자리가 아납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제가 30년의 기자 생활, 방송언론인 생활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자유언론인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강제해직을 당했기 때문에 8년 가까이 자유언론인을 하면서 제 철학과 소신대로 활동했고 언론활동을 했습니다. 자유언론인 시절에 했던 활동이 본인의 생각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본인이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활동과 공직자로서의 활동을 구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조금 하셨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자유인 상태였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당시는 대통령 선거 정국이었습니다. 언론들이 비판하고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이 다 2012년도의 활동내용입니다. 이석우 이사장, 편희상 이사장님으로 호칭하는데 저희는 아직 이사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것인지 여부도 아직 결심하지 않았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인에게 확인할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이석우 이사장의 SNS 활동내용은 크게 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의 글, 두 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에 대한 것으로 거기에 역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있고 다른 후보에 대해 비하한 것도 있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 정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만 그 정책이 중복일 수 있다든지, 중복이라든지 하는 것, 그렇게 3가지에 대해 언론이 크게 비판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군 사이버사령부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 활동은 헌법사항인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당시 고위 간부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정 구속된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정 구속된 그 활동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것입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조금 거두절미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북의 대남사이버 침투가 상당히 우려된다, 그런 부분을 굳이 하지 않으면 굳이 아니지 않느냐, 그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풀텍스트(full text)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박하거나 토론할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밖에서 비판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해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비호하거나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성향의 글을 썼는데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옳다는 댓글활동을 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준비 못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옹호하는 댓글활동을 벌였는데 그다음 해에 그 정부가 들어선 뒤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공보실장을 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지적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12년도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지지활동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저는 공무원도 개인적, 사적영역에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그 개인적인 정치 견해는 반드시 구분되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특정 개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저 개인적인 판단은 이 정책이 좋겠다는 생각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래서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 고위공직, 정무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통위의 산하단체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활동이었고 공직자로서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그 개인의 생각이고 철학이라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의 장으로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년의 기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공직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기자생활, 언론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따로 가지면서도 데스크가 있고, 독자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과 철학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유로운 활동기간에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치 성향이 강한 자유언론인으로서 활동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고위공직자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의 산하단체에서 어떻게 이사장, 리더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2012년 활동에 대해 자성한다고 할까, 그것은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활동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 한 저는 업무 보고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아직 언론과 시민단체와 전문가단체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저희도 거기에 바탕해서 이사장 후보에 관한 많은 논란, 그 검증과정을 아직 마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좀 더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삼석 위원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업무계획 하나하나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청문회나 취임사나 또 처음으로 보고하는 인사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공직에 임하는 입장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 그런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들이 많이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말씀하신 인사말은 아주 미흡해서, 아직도 저희는 이대로 검증을 마치고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나 김재홍 위원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 전제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다짐이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나오시면서 모두 발언했던 그 정도의 말씀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준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책무는 시청자들의 권익보호 또 지역 공동체의 강화, 이런 것들 아닙니까? 과거에 종편 평론가로 활동하시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 그로 인해 방송을 못 나간다고 했을 때 SBS에 대해서 '좌편향 SBS'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YTN에 나가셔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항의를 받으셨을 때는 트위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자 트위터입니다. "YTN에 좌편향 시청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유언론인 시절에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최소한 시청자 권익 전문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과거에 어떤 입장에 있었던지 간에, 시청자들에 대해 편을 가르고, 또 그것에 대해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고삼석 위원님, 김재홍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취지를 종합해서, 이사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자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YTN 시청자들에 대해 트위터 상 그렇게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렸던 대로 제가 잠시 동안 자유언론인 시절에 특수한 방송환경 속에서 했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은 제가 전제한 자유언론인, 특수한 방송환경에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데, 나타나듯이 표현이 조금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혹시 마음이 상했던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과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짐을,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것을 듣기 희망하시니까 시청자 권익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저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공직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가적인 과제가 경제를 다시 한 번 부흥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미디어, 그리고 관련 콘텐츠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대학생들,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국 지역 센터를 통해 그 꿈을 키워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국가 미디어산업, 콘텐츠 산업에 아주 든든한 초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큰 소명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활동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정성·형평성, 정치적 독립성 이 부분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2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인선과 그다음에 이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나 시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조금 아프더라도 이러한 분들의 의견들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해

주시고, 또 소명이 필요한 것들은 직접 소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 언론인으로 오랜 동안 활동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인으로서 진짜 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러한 분들, 문제를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부딪치면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방금 이사장으로서 다짐을 두 번 해 주셨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독립성·중립성에 전혀 소홀하지 않도록 활동하겠다”, 이것은 확고한 의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저는 전 시청자, 국민이 보는 앞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주변에서 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다짐과 약속에서 벗어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한 번 이사장님께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그렇게 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끝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사과의 말씀을 하신 데 대해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포괄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웠던 시절에 했던 행적, 언론활동, 종편 활동가, 종편 평론가라는 말보다는 종편 활동가라는 말을 더 쓰더라고요. 자성한 점에 대해서는 괜찮은 여론이 나올 것입니다. 이사장님 말고 여기에 같이 오신 분이 본부장님이십니까?

○ 박태욱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디어재단의 다른 간부들께 함께 말씀 드려도 괜찮겠지

요. 구체적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활동지원을 함께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전국 지역 곳곳에 전국 각 광역별로 총 5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더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어려운 시민단체들이 미디어활동을 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 지역별 또는 사회계층, 소득별, 학력별,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운영계획은 심결사항입니다.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와 함께 하는 기구로서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대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를 통해 많은 의구심과 여론층의 불안을 씻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자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나름대로 세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다음에 나중에 방송기반국과 함께 구체적인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의결할 내용이 생기면 거기에서 심의·의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의 시청자미디어센터 5곳이 활동했을 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생겨서 이것을 통괄해서 활동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각 센터의 업무를 통괄하면서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박태옥 시청자진흥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진흥본부장 박태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90조의2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적 구성입니다. 1실 1본부(5부) 5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100명이고, 올해 서울센터는 6월에 개관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울산센터를 개관하면 정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직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방송 및 시청자 지원 분야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권익증진 및 방송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방송시장 및 방송광고 사후규제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주요 사업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10개

세부사업에 22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현 시점에서 주요 이슈로는 재단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데, 재단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시청자 권익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도약·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원의 자체 확보가 시급한 것도 현 시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권익 실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본사와 지역센터 간 유기적·통합적인 운영으로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범정부 핵심과제인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지원하고, 시청자미디어축제 등의 기획·운영으로 대국민 이미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표 시청자 권익증진기관', '미디어 인재 인큐베이터' 등 재단 정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이슈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미디어 허브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센터의 미디어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재단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타 기관과 사업을 위탁하고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해 센터 간 자원 공유로 가용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허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극적 시청권 보장 개념에서 능동적 방송 참여 개념으로 시청자 권익증진 개념을 확대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 및 자유학기제 등 정책 연계 미디어 교육 강화를 통해 대국민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함께하는 미디어 세상을 움직이다. Go N.E.A.R!'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잡았고, 비전으로는 시청자와 함께 하는 미디어 전문기관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N.E.A.R, 즉 공동체의식 강화, 미디어교육 확대, 접근성 보장, 시청자 권익증진, 이 4가지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미디어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재단의 비전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공동체의식 강화입니다.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재단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협력 가능 기관과 연계하고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겠습니다. 지역사업자, 유관기관 및 타 지역 미디어센터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역의 MSO, IPTV사업자의 지역발전사업 기금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재단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케이블 SO 채널에 우선 편성토록 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미디어센터 즉 MBC,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센터들과 사업 위탁,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연계하여 지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교육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베트남과 추진한 바 있지만 민간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 미디어교육 지원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과 대상국이 각각 역할을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대상 미디어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미디어교육 확대입니다. 미디어교육 확대로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추진방향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창작·마케팅 등 미디어를 전반적인 영역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미디어제작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비즈니스 및 마케팅 방법을 교육하고 지원하여 콘텐츠 창출에 보다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학기제 및 미디어거점학교 지원 등 학교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범정부 핵심과제인 '자유학기제 정책' 연계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65개 학교와 연계되어 있고,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300개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관·연 협업 체계 구축으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센터별로 자유학기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미디어거점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방송콘텐츠 제작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을 하고, 이 콘텐츠가 공모전에도 출품이 되고 방송사에 방영도 되고, 교육결과물을 전시하는 등 시청자미디어 축제와 연계하여 성과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접근성 보장입니다. 접근성을 보장하여 지역 시청자미디어 허브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용 확대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단 설립기념식이 7월에 있는데 이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매년 해 왔지만 시청자미디어 축제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가용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져야 하고, 또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신규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에 서울센터가 개관되고, 울산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 대구, 충북, 전북, 제주에 대한 추가검토를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적합성이 높은 우수 인재를 수시로 채용하여 이들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 내실화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장애인방송 시청에 최적화된 TV 보급으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청각 수신기는 12,2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보건복지부·장애인단체와 협조를 강화해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과 난청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시청자 권익증진입니다. 정책지원 등 재단 기능 확대로 시청자 권익증진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센터 특성화를 통한 시청자 방송 참여 확대입니다. 정부 3.0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센터별로 지역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청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시청자 권익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소수자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공적 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심도 있는 이사회 운영과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지역 센터 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과 시청자 불만사항 접수 등을 통해 공정한 미디어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방송광고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확대시켜 홈쇼핑시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례 교육 등을 통해 시청권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추진일정은 7월 8일 재단 설립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는 재단이 수익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 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가능 기관 연계 및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울산센터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질문하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페이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1페이지씩 차이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슬로건 미션, 비전이 있는 페이지의 '네트워킹(Networking)' 두 번째 쪽지로 '미디어교육 분야 ODA 추진'이라는 말이 있고, 7페이지 두 번째 '미디어 교육 분야의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한국에 특화된 방송통신 IT 쪽 모델들이 개도국에 공유되고 전파·확산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접근센터다, 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다, 전자정부 관련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최근에 EBS 모델도 그런 사례가 되는 것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도 한국이 앞서 나가는 여러 가지 방송통신 분야의 모델 중 하나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ODA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와 국제협력이든 외국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인사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서 해외에 갈 때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것을 잘 알려주면 우리가 꼭 무상원조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같이 공동세미나를 연다든지..., 우리 정부의 자금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여기에 열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로지 ODA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교육 분야의 국제협력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대등한 차원에서의 교류, 공유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OD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이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ODA 관련 큰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 확정하는 기관이고, 집행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적어 놓은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기업 참여 후원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주로 지역 MSO, IPTV 사업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지는 지역센터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하고 싶은 일에 비해 예산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같은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의 협찬 내지는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일반 대기업, 거기에 지금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운영하는 특화된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과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대기업들과의 공동사업 내지는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서울센터를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지자체별로 하나의 센터만 앞으로 개설해 나간다면 서울센터든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서울처럼 지역 바운더리(boundary)가 굉장히 넓은 때 강

북 쪽에 하나, 다음에는 강남 쪽에 하나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서울성북센터라고 네이밍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사항이라고 방통위 설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의 제대로 된 정식 산하기관으로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심의·의결사항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방통위가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재단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우선 걸리는 것이 지금 당장은 바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조만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버넌스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회도 있는데, 또 방통위 설치법에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매 건마다, 아까 보니까 10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 집행할 때마다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으로서의 비효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위원회 체제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인 부처 차원에서 산하기관의 의사결정을 매 건마다 장관이든 국장 전결이든 결재를 받느냐? 아닙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처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어떤 것을 의결사항으로 했고, 어떤 것을 보고사항으로 했고, 어떤 것을 KCA가 위탁받아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를 재단과 사무처에서 같이 연구해서, 다음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논해서 앞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져가자는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고한 재단 운영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물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추진경과에 보니까 ‘재단이사회, 운영기본계획(안)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나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가능한 한 빠르게 셋업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재단 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 예산이나 사업이 KCA에 위탁됐을 때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주로 담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이사회 논의를 거쳐 재단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확정하고, 저희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중장기 구축계획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끝으로 고삼석 위원님과 김재홍 위원님이 오늘 주로 이사장님과 상견례를 겸해서 여러 가지가 걱정 되셔서 당부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님과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자리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전히 클리어 시키고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끊임없이 협의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개별적인 만남이 됐든, 그래서 위원장님은 당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재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이사장님과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교환을 통해..., 저는 앞으로 일이 진행되면

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법적인 방통위의 기능을 가지고 말씀 드린다면, 물론 방송기반국장이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견개진도 하겠지만 방통위 위원장님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회계 검사, 직무 감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일 수도 있고 과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해소하고 클리어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재단을 계속 이끌어 가면서 어차피 방통위와는 같이 협력, 조율, 의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재단 자체의 이사회도 있고, 정관도 있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법규가 있으니 그렇게 하시되, 물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감독권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있어 방통위와 긴밀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시청자 쪽이 제기한 불만사항, 민원사항 처리 창구입니다. 제가 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것을, 소극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하는 불만처리창구가 아니라 시청자 권익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생기기 전 작년부터 각 지역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연계시켜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기반국장께 부탁을 드리는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연계시켜 동일 체계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도 좋고 본부장도 좋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연계고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고안전에 보면 지금 각 지역별로, 각 권역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맡고 MBC, 문체부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각 지역에서 미디어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모르지만 다른 부처와 기관들의 미디어센터는 중소지역, 중소도시이거나 어려운 격오지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각 권역별 중심도시, 적어도 광역시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권역별로 미디어센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본부장! 각 권역별로 이런 시청자센터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중심 역할을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하고 있습니까?

○ 박태욱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왔고, 각 지역문화권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율성을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만들어진 재단과 각 지역별, 권역별로 만들어진 미디어센터협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유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비전이 있으면 중앙본부에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중앙에서 통제, 컨트롤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처음부터 지역의 미디어센터와 잘 협의해서 그 특성을 살려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박태욱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근거가 되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설립됐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어떤 이념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구입니까?

○ 박태욱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김 국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이념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시청자 권익증진,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조직이나 이런 보고 내용을 봐도 우리가 우려하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나 정치적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인데, 미디어재단을 우리가 지나치게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조직의 출범 초기부터, 성격이 '이것이 아닌데'라는 식으로 자꾸 윤색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미 2005년부터 출범한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그 제도가 계속 발전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설립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국민들 속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국민적인, 크고 좋은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와 같이 교감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겠지만 어떤 이념적인 문제에 우리 스스로 칼날을 썬다든지 전착을 해서는 결코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디어재단 자체의 운영방식은 기존에 해 왔던 다른 많은 재단이나 정부기구 산하에 있는 여러 기구들의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미디어재단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기에 별도의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ODA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재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조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조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의 미디어와 ICT가 워낙 발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ODA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 우리와 같은 미디어 센터를 만들 그런 여건에 있는 국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요. 거기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ODA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청자미디어 재단이 이념이나 정치와 무관한 조직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문제제기가 자칫 괜한 트집 잡기로 오인될 수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단 이사장 인사절차나 그 내용 자체가 말 그대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되었다면 이런 논란은 아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즉, 원인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저는 공직이나 공직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공평무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립성·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사사로움이 없이 공평하게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오늘의 이 보고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우선 소위 초별이라고 할까요? 설립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개요를 보고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심화된 운영계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고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5분 폐회 】